

◆ 개발이익보호제도의 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

제 중 옥

보험개발원 생명보험본부 선임담당역

1. 도입배경

보험사간 경쟁심화 등으로 타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상품을 모방하여 유사상품을 시판하는 사례가 일반화됨에 따라, 선발이익 보호를 통한 신상품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보호제도가 도입 되었음.

- 생명보험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3년까지 재경부장관이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독점적 판매권을 인정하였음.
 - 1993년 하반기 이후 상품관리규정에 의하여 상품은행제도¹⁾가 운용됨에 따라 독점적 판매권이 폐지되고, 공동상품의 형태로 신상품 개발이 이루어짐.
- 외국의 경우 국내와 같은 협정서를 통한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는 제도는 없으나, 신상품 개발에 대한 철저한 정보보완관리를 통하여 타사에서 모방상품의 개발이 용이치 않음.
- 국내의 경우 금융시장개방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가격자유화 관련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신상품 개발 측면의 경쟁력이 취약함에 따라 신상품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특히,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신상품개발에 대한 인식결여로 개발이익의 침해사례가 많음에 따라 자율협정 형태로 침해 사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함.
 - 또한 상품은행제도를 이용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신상품을 타보험사

* 본 논문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개인견해를 밝힘.

1) 보험사별 동일한 상품개발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보험사의 기개발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3년에 도입되어 2000년까지 운용됨.

테마진단

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선발이익(first-mover advantages)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미흡으로 신상품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2002년 12월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 신상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음.

2. 운용현황

2002년부터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보호에 관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03년 9월 현재까지 5건의 신상품만이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등 현재까지는 본제도가 신상품개발 유인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 생명보험사는 보험회사 자율결의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는 게임의 룰(rule)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본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신상품은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함.
 - 담보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 없는 새로운 상품으로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 없는 새로운 상품
 - 기타 기존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가 필요한 상품
-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는 신상품이 보고상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의 요율확인후, 신고상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하고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게 됨.
 - 신상품심의위원회는 7인²⁾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신청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됨.

- 현재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발생일 이후 3월 이내로 되어 있으며, 3개월 이후에 자동적으로 소멸됨.
- 현재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은 7건이었으며, 이중 5건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었음.
-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00건의 신상품 및 변경상품중 5건(개발상품 대비 0.25%)만이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어 여전히 기존상품의 변경 중심으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상품중 피보험자의 확대, 연금수령방법에 대한 계약자 선택권 확대, 사망보험금의 선지급형태 등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신상품을 중심으로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었음.

<표 1>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상품

신청상품	신청사	내용	사용기간
(무)패밀리 어카운트보험	교보생명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적립(Account)하고, 가입후 보험료의 변경없이 자유롭게 보장내용을 변경설계하는 보험상품	2002.7.30 2002.10.29
(무)삼성리빙케어 보험	삼성생명	중대질병 발병시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빙케어보험금으로 선지급하는 보험상품	2002.6.7 2002.9.6
(무)PCA플래티넘 연금보험	PCA생명	적립기간동안의 자유로운 입/출금과 연금수령시 연금수령방법, 연금수령기간, 연금수령액을 고객이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신개념의 자산관리 연금보험상품	2003.6.11 2003.9.10
(무)교보다사랑 종신보험	교보생명	기존의 연생개념인 배우자, 자녀등을 사업파트너까지 확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우발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하는 연생종신보험	2003.8.19 2002.11.18
(무)메디컬 종신의료보험	흥국생명	가입시부터 종신까지 발생하는 의료비(수술급여금과 입원급여금)를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보험	2003.9.24 ~ 2003.12.23

- 2) 현재 신상품심의위원은 보험사의 상품개발담당 임원, 대표계리인 3인과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및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으로 구성됨.

테마진단

- 최근 기존상품과 차별화된 신상품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3건의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신청되는 등 배타적 신상품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음.
-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회사 이미지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신상품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3. 향후 운용방향

배타적 사용권의 활발한 이용과 신상품개발의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유사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향에서 현행 배타적 사용권 인정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최근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판매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보험관련 규제의 완화로 자유로운 상품개발의 제도적 여건이 마련됨.
- 변경 보험관련 법규에 따르면 보험사는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게 신상품을 개발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인가제 시행시보다 신상품 개발의 증가가 예상됨.
- 향후 대형사 및 외국사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의 개척 및 신판매채널 확보를 위하여 배타적 사용권의 활발한 이용이 예상됨.
- 반면, 시장인지도가 낮은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시장 선점효과보다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배타적 사용권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인터넷금융의 확산, 방카슈랑스 허용 등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의 발달로 신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새로운 금리형태의 도입 등 단순 금부변경 중심의 상품개발이 기초율 중심의 상품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신상품개발의 증가

- 인터넷, 은행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채널에 적합한 신상품개발의 증가
-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로 인한 맞춤형 상품의 증가
- 신상품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나 현재 3개월 이내의 배타적 사용권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배타적 사용기간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함.
-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개발 후 판매준비가 완료된 후에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배타적 사용기간은 2개월 정도에 불과함.
- 현재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은 신상품 개발사가 보험개발원의 요율확인 또는 금감원의 신고 수리후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개발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존 개발상품과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상품심의위원회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타금융상품과는 달리 보험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개발 상품에 대한 조사 중요성이 높음.
-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신상품에 대한 개발이익을 확대하고 기존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절차 개선 등 신상품개발이익보호 제도를 재정비하여 신상품개발 유인 제도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